

사회봉사단 규정

제정 2012. 3. 1.
개정 2016. 3. 1.
개정 2016.10.31

제 1장 총 칙

제1조(적용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.)의 사회봉사단(이하“봉사단”이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목적) 본 봉사단은 자연사랑, 인간사랑, 문화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봉사의 참뜻을 배우고,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아름다운 사회봉사 문화의 전통을 대학에 정립시키는데 있다.

제3조(위치) 본 봉사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에 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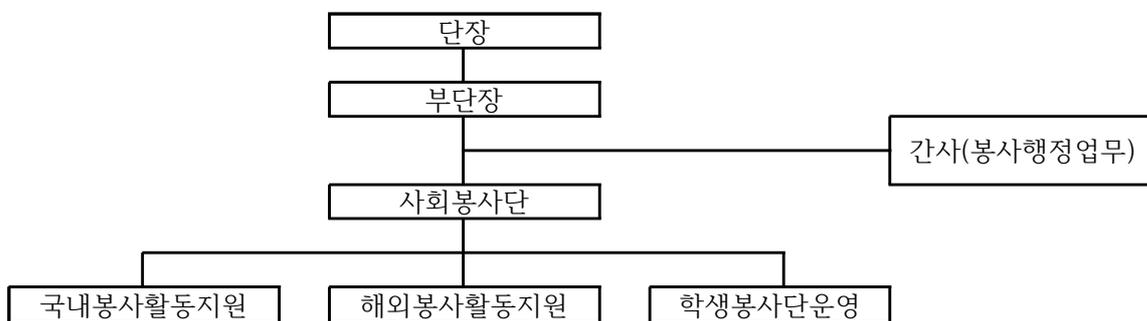
제4조(사업) 본 봉사단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
- ②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
- ③ 국내·외 봉사기관 선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
- ④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활동 계획수립
- ⑤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(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)
- ⑥ 기타 위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

제4조의 2(교과운영) 사회봉사활동 교과운영은 ‘사회봉사활동 운영지침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
제 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본 봉사단의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.



제6조(단장) ① 단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한다.

제7조(부단장) 부단장은 교육지원처장과 학생서비스센터장이 담당하고, 각각 교직원과 학생 사회봉사단을 운영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행정간사) 행정간사는 교직원과 학생의 사회봉사업무 담당자로 하며 봉사단 행정업무 및 봉사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3장 단 원

제9조(자격) 본 봉사단 단원은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.

제10조(가입) 제9조의 자격이 있고 사업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권리와 의무) 단원은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제12조(자격상실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
- ① 본 봉사단의 목적 위배
- ② 본 봉사단의 명예 손상
- ③ 본 봉사단 탈퇴
- ④ 본인 유고

제4장 특 전

제15조(특전) 봉사활동 참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- ① 봉사활동 우수자는 해외봉사활동 지원시 우선선발 기회 부여
- ② 학생의 경우 학적부상 사회봉사활동 명기
- ③ 봉사활동 우수자는 시상
- ④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